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안내>

교무실 212-4308 유치원 211-5381 행정실 212-6474

학교 교육 발전과 올바른 자녀 교육에 정성을 다하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교사의 교육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을 만듭니다. 교사가 흔들리면 학생도 흔들립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양질의 교육 을 만들고 양질의 교육은 건강한 인재를 만듭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모두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힘이 나고 흥이 나는 행복한 우리 전주반월초등학교 교육이 되도록 아래 사항을 유념해주시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상호 존중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의 개념

교권이란?

- ◆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 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 ◆ 교육법규에 따른 교원의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교수·학습 내용 편성권, 교수·학습 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 요구권 등

교육활동 침해란?

◆ 「교원지위법」제15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활동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교사의 교육활동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교육받을 권리)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교육활동 침해 유형

의도적인 수업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방해 행위	• 수업 중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교실에서 눕는 경우	
(2023 개정안)	•교실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상해 및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상적인	
	신체의 안전성을 해치는 행위	
	•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나가는 학생을 제지하는 교원을 밀친 경우	
	• 교원의 신체를 향해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진 경우	
협박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 교원의 가족 등 교원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를 해코지하겠다는 경우	
	• 외부의 인맥을 이용해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경우	
명예훼손 및 모욕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내용을 적시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어떤 학생이 학생,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특정 학생의 몸을 만졌다."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	
	• 교사에 대하여 비하 발언을 다수가 있는 장소 또는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경우	
	• 학생들 간 단톡방에서 특정 교사의 외모 비하 등을 하는 경우	
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	
	• 학생이 지도 교사에게 불응하면서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는 경우	
	• 교사의 출석부 또는 개인물품을 찢어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성폭력 범죄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	
	적인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 교사의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강제추행)	
	•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의 얼굴을 촬영, 캡처하여 나체 사진과 합성한 경우	
	및 합성물을 다수 학생들에게 배포한 경우	
불법정보 유통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 카카오톡 메신저의 단체 채팅방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경우	
	기기오속 매선시의 단세 세팅당에 어둬의 시결들 게세인 경우 •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찍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CTV 화면에 나온 것처	
	현 기사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경우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	
 공무집행방해	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및 업무방해		
\ \ \ \ \ \ \ \ \ \ \ \ \ \ \ \ \ \ \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고 교사의 머리채를 낚아채서 넘어뜨리는 경우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집에서 자녀가 원격 수업 중일 때 학부모가 교원의 수업 장면을 촬영하여 단톡방에 무단 배포한 경우
- 학생이 수업 중인 교원의 얼굴을 촬영 후 합성하여 희화화한 후 다른 학생들에게 무단 배포한 경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학부모가 수업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생활지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앞서 설명한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학교장이 교권의 존중과 교원의 신분보장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3.3.23.)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확대 수업 침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음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입니다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외 봉사, 특별교육, 충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	https://woutu.bo/0o7-pDuIJvD4	
(초등학생)	https://youtu.be/OeZ-pDuUvD4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	https://woutu.bo/pkI.MlkgCv7M	
(학부모)	https://youtu.be/pkLMlkzCyZM	

2023. 4. 25.

전 주 반 월 초 등 학 교 장